

의안 번호	제3657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9월 3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9월 1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9월 19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9월 19일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제도 활성화, 기부자 예우 및 포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김포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(안 제12조)
- 나. 제도 활성화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1조)
- 다.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2조)
- 라. 포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3조)
- 마.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